

# 「구미시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」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4년 10월 8일

나. 제 출 자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: 2024년 10월 10일

라. 상정일자: 2024년 10월 17일

제28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### 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행정안전국장 방 주 문

#### 나. 제안이유

- 구미시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·장려하기 위하여 「구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에 따라 설치된 구미시종합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.
-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도모하고자 「구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 제11조에 근거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게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.

## 다. 주요내용

- 사무명 : 구미시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
- 추진근거
  -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 제19조
  - 「구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 제11조, 제12조
  -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
- 위탁사무
  - 지역의 기관·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
  -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·홍보
  -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
  -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 및 시범운영
  -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
  - 그 밖에 지역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
- 시설개요
  - 시설명 : 구미시종합자원봉사센터
  - 설립일 : 1997. 12. 5.
  - 소재지 : 구미시 백산로 211, 3층(구미시 새마을회관)  
※ 구미시 새마을회관(소유주: (사)구미시새마을회) 무상임대 사용 중
  - 규모 : 195㎡(사무실, 센터장실, 창고)
  - 근무인원 : 10명(센터장 1, 사무국장 1, 부장 1, 사원 5, 코디 2)  
※ 센터장 비상근직
- 위탁기간 : 2025. 1. 1. ~ 2026. 12. 31. (2년)
- 소요예산 : 1,168백만원(도비 28, 시비 1,140)
- 수탁자 선정방식 : 성과평가 및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재계약  
※ 수탁자 : (사)구미시새마을회
- 적정성 검토결과 : 적정 ※ 2024년 제3차 구미시 민간위탁 관리위원회 심의

○ 부서의견(민간위탁 필요성)

-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 제19조제1항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.
- 또한, 민간의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자원봉사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는 전문가 인력에 의한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 및 풍부한 경험을 통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.
- 이에, 인적·물적 자원 및 관리시스템을 보유하고 다년간의 자원봉사센터 운영 경험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춘 (사)구미시새마을회에 구미시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탁하여 그간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구미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### 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영 훈

○ 본 동의안은

- 구미시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할 것을 동의받기 위한 것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‘구미시종합자원봉사센터’는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촉진시키고,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기관과 단체에 자원봉사자를 지원하는 등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,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, 프로그램 개발, 교육, 지역활성화 및 네트워크 증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.

- 현 수탁자인 (사)구미시새마을회에는 종합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된 1997년부터 지금까지 위탁형식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, 2024년 기준 사업비 607,726천 원(국40,662 도 29,017 시 538,047)의 예산으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중이며 사업의 연속성을 위한 민간위탁 재계약의 필요성에 이견이 없고,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, 성과평가, 성과보고서 등의 자료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2023년 민간위탁 재계약 체결 당시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(2022.11.9.)에 따라 재계약의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, 해당절차 없이 재계약을 추진한 사실이 있음. 집행기관에서는 업무추진 시 관련법과 근거법령의 개정유무를 확인하고 법적 행정절차를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사업부서, 법무부서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.
- 또한, 수탁 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위탁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, 사회 변화와 기술 발전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함.

#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
#### 5. 토 론 요 지

- 2025년도 본예산 제출 전까지 민간위탁 재계약 감사결과 제출.
- (사)구미시새마을회와 구미시종합자원봉사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구분되어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 시 만전을 기해야 함.

#### 6. 소수의견의 요지

#### 7. 심 사 결 과: 원안가결